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11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차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외 3건)을 위해 정책사업비(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11,814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11,814백만원 감액하여,
- 나. 정책사업비를 38,282백만원, 예치금을 28,30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 지출 부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순지출)	66,595 (22,487)	66,595 (26,473)	66,595 (38,287)	- (15,800)	0% (70.3%)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22,482	26,468	38,282	15,800	70.3%
	융자성 사업비	17,684	17,684	27,684	10,000	56.5%
	비용자성 사업비	4,798	8,784	10,598	5,800	120.9%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	0%
재무활동	예치금	44,108	40,122	28,308	-15,800	△35.8%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 초과(70.3%)

<1차 변경>

- 서울시청 본관 에너지효율화 사업 1,800백만원 신규편성
  -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70백만원 신규편성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150백만원 신규편성
  -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SEMS) 50백만원 신규편성
  -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추진 100백만원 신규편성
  - 공동주택 전기설비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250백만원 신규편성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134백만원 신규편성
  - 주민참여형 수요반응(DR) 시범사업 100백만원 신규편성
  - 난방 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지원단 운영 80백만원 신규편성
  -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167백만원 신규편성
  -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 개최 85백만원 신규편성
- (예치금 3,986백만원 감액)

<2차 변경>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10,000백만원 증액  
(당초 12,705백만원 → 변경 22,705백만원)
  - 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290백만원 신규편성
  - 수성도로 전환장비 구매지원 320백만원 신규편성
  - 난방효율 개선사업 854백만원 신규편성
  -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 350백만원 신규편성
- (예치금 11,814백만원 감액)

###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동없이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100억원) 증액 및 국제기후테크 컨퍼런스(2억 9,000만원),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3억 2,000만원), 난방효율 개선사업(8억 5,400만원),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지출계획한 바,
  -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441억 800만원)보다 △35.8%, △158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며
  - 다른 ②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당초 지출계획(224억 8,200만원)보다 70.3%, 158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 A )	1 차	2 차 ( B )	증 감 (C=B-A)	증 감 륜 (D=C/A)
<b>지출합계</b>	<b>66,595</b>	<b>66,595</b>	<b>66,595</b>	<b>0</b>	<b>0.0</b>
<b>기후변화 대응 강화</b>	<b>22,482</b>	<b>26,468</b>	<b>38,282</b>	<b>15,800</b>	<b>70.3</b>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600	600	600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	1,959	1,959	1,959	-	-
<b>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b>	<b>12,705</b>	<b>12,705</b>	<b>22,705</b>	<b>10,000</b>	<b>78.7</b>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4,684	4,684	4,684	-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9	1,009	1,009	-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500	500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10	10	10	-	-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유용자 지원	1,010	1,010	1,010	-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4	4	4	-	-
서울시청본관에너지효율화 사업	-	1,800	1,800	-	-
기후위기에 적응 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	70	70	-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1,150	1,150	-	-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 ( S E M S )	-	50	50	-	-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	100	100	-	-
공동주택 전기설비안전진단 및 고 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	250	250	-	-
치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발대회 개최	-	134	134	-	-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시범사업	-	100	100	-	-
난방 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 지원단 운영	-	80	80	-	-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	167	167	-	-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 개최	-	85	85	-	-
<b>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b>	<b>-</b>	<b>-</b>	<b>290</b>	<b>290</b>	<b>-</b>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	-	320	320	-
난방효율 개선 사업	-	-	854	854	-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	-	-	350	350	-
<b>재무활동 동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b>	<b>44,108</b>	<b>40,122</b>	<b>28,308</b>	<b>△15,800</b>	<b>△35.8</b>
<b>행정운영 경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b>	<b>5</b>	<b>5</b>	<b>5</b>	<b>-</b>	<b>-</b>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②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동 지출계획 변경안이 증액편성한 기금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sup>2)</sup>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